

## 일본특질문 【질문1 : 한국의 가업승계제도】

~비상장주식 평가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향후 대책

### (1)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기업의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기업을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서 법인의 주식을 자녀 또는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가업승계를 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가액을 100억 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 후 30억원까지 10%, 30억원 초과분은 20%의 세율로 과세 후 상속 시 정산하는 제도이다.

### (2)가업상속공제 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

1997년에 도입할 때에는 15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 1억원을 한도로 공제하였으나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이다.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인 기업으로 공제금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한도30억원)이었으며, 이어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70%까지 확대하고, 그 한도액은 최대 300억원까지 확대하였다. 2014년부터는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3천억원 이하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0% 상속공제(최대500억원 한도)하되, 피상속인이 보유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이월 과세 하는 것으로 하였다. 2017년에는 가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 경과하여야 500억원을 공제해주고, 2019년부터는 상속세 납부능력의 검증을 위하여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해당 가업상속인이 납부하는 상속세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일시적으로 고액의 상속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완화하되 추후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자는 취지이다.

### 1.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 1) 사업승계지원제도의 요건

①18세 이상 자녀가 ②60세 이상 부모로부터 ③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증여자가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주식을 증여 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④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2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중소기업은 업종기준·매출규모 기준·자산총액 5천억원미만, 중견기업은 업종기준·매출규모기준(3년평균 5천억원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 2) 사업승계제도의 절차(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①수증자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증여일로부터 5년내 대표이사 취임(7년간 대표이사직 유지 → ②요건 조사(증여세 부과결정 또는 신고 시인) → ③7년간 사후관리

→ ④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증여세 추징

3) 증여세 추징사유(7년간 사후관리, 추징이율 일변3전/연10.95%)

주된 업종 변경, 1년이상 휴업 또는 폐업, 가업의 불승계, 증여일로부터 5년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 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추징제외사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수증자 지위를 승계, 증여 받은 주식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가 질병요양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경우, 합병·분할 등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의 상장에 따른 지분을 감소,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을 감소

## 2. 가업상속공제 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

### 1) 가업상속공제액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영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①피상속인이 10년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200억원(2017.12.19개정)

②피상속인이 20년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2017.12.19개정)

③피상속인이 3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500억원(2017.12.19개정)

### 2) 가업승계제도의 요건

10년 이상 계속된 중소기업 경영자의 ①배우자나 18세 이상 자녀가 ②상속이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③상속세 신고 후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④10년간 종업원을 감원하지 않으며, ⑤승계기업의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가업을 계속하여 경영해야 하며, 피상속인은 가업영위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한다. ㉠100분의 50(상장법인의 경우 100분의30이상)이상의 기간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3) 가업승계제도의 절차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하였던 ①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 → ②신청 내용의 사실여부 조사(가업승계의 사전요건 등을 조사) → ③상속세 결정(정부부과) → ④10년간 사후관리 → ⑤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추징

4)상속세 추징사유(10년간 사후관리, 추징이율 연1.8% )

- ㉔가업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내 10%)이상을 처분한 경우
- ㉕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대표이사 미취임, 주된 업종 변경, 1년 이상 휴·폐업 또는 무실적)
- ㉖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으로 인해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는 제외)
- ㉗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 80%에 미달하는 경우
- ㉘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추징제외사유>

- ㉙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상속인이 지위 승계 해야 함)
- ㉚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㉛상속인이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㉜수용 또는 국가 등에게 양도, 시설개체(改替), 사업장이전 등으로 처분, (대체취득 해야 한다)
- ㉝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 ㉞내용연수 지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㉟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㊱상속인인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장하기 위해 지분을 감소시키는 경우

### 3. 가업상속재산 중 주식평가방법

#### (1)평가의 원칙(상속세법 제60조)

-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재산평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상속세법 제60조 제1항).
- ②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 한다. 이때 적용되는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적용 한다. 시가의 정의에 적합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이내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등과

같은 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본다. 이러한 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의 비율(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80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2017.4.1~2018.3.31까지는 70%)을 평가액으로 한다.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자산총계의 50%)

\*1주당 순손익액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10%(기획재정부령 고시이율)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6으로 나누어 계산 한다(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에3,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2,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음 7개의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대신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계산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자산수증이익 등이 세전이익의 50% 초과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을 위한 주식가액 산정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이 세전손익의 50% 초과(3년 가중평균 금액) (㉥)주요 업종 정상매출 발생기간이 3년 미만 경우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1주당 순자산가치 = 해당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1주당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청산중인 법인, 사업계속 곤란법인,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휴업·폐업중인 법인, 최근 3년간 계속 결손인 법인은 순자산가치(영업권 미계상)에 의하여 평가. 그러나 법인전환 후 3년 미만 법인 등은 영업권을 가산하여 평가 ㉡골프장 등의 업종으로써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자산총액 중 주식가액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잔여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1주당 순자산가치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발행주식총수 또는 환산주식수

\*증자 또는 감자에 따른 환산주식수 =

[증자(감자)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 [증자 (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증자(감자)주식수] /증자(감자)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비상장주식평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시행령 제5제6항에 규정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의 범위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에 대하여는 그 가액의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하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초과 보유 시 30%(중소기업 15%)를 가산한다. 최대주주 등이란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계기된 친족 등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할증평가 하지 아니한다.

㉔계속3년간 결손법인의 주식 ㉕평가기준일전 6개월(증여는 3개월)이내 보유주식 전부 매각된 경우 ㉖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㉗상호출자주식(2차 출자법인부터 할증평가 제외) ㉘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으로서 영업이익이 모두 '0' 이하인 법인 ㉙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법인청산이 확정된 주식 ㉚최대주주로부터 최대주주 이외의 자가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경우 ㉛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 주식

#### 4.가업승계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1)중소기업중앙회가 2017년11월~12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 67.8%는 승계 계획이 있으며, 64.6%는 자녀에게 승계하고 싶다고 하였고 경영 1세대 일수록, 대표연령이 높을수록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중 58.2%는 승계방식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는 가업승계제도가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 가업승계의 애로사항으로 '상속세·증여세 등 조세부담'이 67.8%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자금·판로(販路) 등 종합적 지원정책 부족이 17.4%로 뒤를 이었다고 한다. 전체 중소기업 697,630곳 중 업력(業歷)이 50년 이상 되는 곳은 1629개사(0.2%)에 불과하였고, 중소기업(長壽)기업의 평균업력은 56.1년 이었다.

2)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장기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최대주주의 주식보유 비율이 비상장법인은 50%, 상장법인은 30%이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하면서 그 기간의 50% 이상,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기간 중 5년 이상의 기간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으로 고령화(高齡化) 시대에 창업주가 고령의 나이에 대표이사를 해야 하는 점, 높은 세율,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의 할증평가, 적용 후 10년간 매사업연도 80%의 고용유지 또는 10년간 평균100% 고용유지(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120%)를 요구하는 점 등 단점인 규정을 개선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승계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10년간의 사후관리, 기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특례제도 적용 신청기업은 2014년도에 106건, 2015년도에 76건, 2016년도에 130건 결정되었을 뿐이다.